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6/ 18 통권 1732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6월 30일까지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6): 이사회
- 대손세액공제요건 및 적용절차
- '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6월 30일까지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해설
-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복숭아 삶아서 냉동상태로 수입하면 수입부가세 과세물품임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 經營 戰略

〈해외주식·금융투자소득의 과세방법〉

항목,구분	주식투자이익·차익	주식 지분의 배당소득 등
국내비상장중소기업	주식매각이익×세율 11%	금융소득합산과세 ⊖ 원천세율 15.4% 차감 선납 후 지급
비상장 대주주	주식매각이익×세율 33%	
상장사 소액주주	금융투자소득과세 폐기	
상장사 일반주주	금융투자소득과세×세율 22%	
상장사 과점대주주	금융투자소득과세×세율 33%	
해외주식직접투자	금융투자소득과세×세율 22%	금융소득합산과세×종소세율 ⊖ 해외원천징수감액함 (원천세 선납임)
해외주식 직접거래		
해외주식 현지 ETF		
역외펀드회사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32호 / 주간 25호

2025. 6. 18.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해외주식·금융투자소득의 과세방법	표지
CEO의 경영산책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6): 이사회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기타소득 귀속 및 지급년월 관련 - 매입세금계산서 과다발행 건 후속조치에 대한 문의 건 - 국내용역에 대한 해외업체 및 해외업체의 국내법인과 계약시 부가세 처리여부 - 기계장치 수리에 따른 비용에 대한 자본적지출 가능여부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대손세액공제요건 및 적용절차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주요 세액공제·감면 요약	10 11
직장인 Survival	동기부여(Motivation)의 중요성 5가지	12
최신 판례 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법규법인-838, 2024.11.21) -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A법인”)이 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게임 출시 후에 A법인에게 지급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게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내국법인이 A법인에게 게임 개발 중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이하“MG”)가 해당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국조-12, 2024.09.30)	13 14
세정 뉴스와 해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올해 대상자 2051명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복숭아 삶아서 냉동상태로 수입하면 수입부가세 과세물품임	12
세무정보	- '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6월 30일까지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의 계산 해설	15 26
회계정보	-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38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6): 이사회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건전한 거버넌스의 구축 운영의 관점에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2023) 원칙 중 이사회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지배구조체계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 이사회에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이사회에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사회에 구조와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고, 국가 내에서도 다르다. 일부 국가는
감독기능(supervisory function)과 경영기능(management function)을 분리 하여 각기
다른 기관에 배정하는 이원적 구조의 이사회(two-tier boards)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비집행이사(non-executive board member)로 구성된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와 집행간부들로 구성된 "집행이사회 (management board)"를 보유하게 된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집행간부와 비집행 이사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는 단일구조(unitary)의 이사회를
보유하고 있다. OECD원칙은 어떤 이사회조직(board structure)이 기업지배기능과 경영진 감독
기능을 보유하든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이사회는 기업전략을 제시함과 아울러 경영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며 기업에 대한 대립적 요구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주주의 적정한 수익을 책임져야
한다.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이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위험관리시스템과 준법시스템을 감시하는 것이다.
준법시스템이란 기업이 세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환경법, 고용평등법, 산업안전법 등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준수 하도록 고안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

또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울러 이사회는 종업원, 채권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을 적절히 고려하고,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환경적 기준,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A. 이사는 완전한 정보(on a fully informed basis), 신의(in good faith), 상당한 주의(with due diligence and care)를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해야 한다.

이 원칙은 이사의 신의의무(fiduciary duty)의 2가지 핵심요소인 주의의무 (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설명하고 있다. 이사는 주의의무 (duty of care) 이행을 위해 완전한 정보, 신의, 상당한 주의를 바탕으로 행동 해야 한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사가 중과실(grossly negligent) 없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하여 내린 결정이라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의의무(duty of care)위반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OECD원칙은 이사에게 완전한 정보(on a fully informed basis)를 바탕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주요한 기업정보(corporate information)시스템과 법규준수 (compliance)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건전하고, 이들이 OECD원칙에 따른 이사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다면 이사는 이를 좋은 관행으로 인정하고 만족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의 의무의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데 비해, 일부 국가에서는 증권거래규정, 회계기준 등에 별도로 의무화하고 있다. 충실의무(duty of loyalty)는 주주의 평등 대우, 관계자거래 모니터링, 주요 집행간부 이사에 대한 보수정책 등 다른 OECD원칙의 효과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

B. 이사회는 결정이 다른 주주 그룹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사회는 모든 주주들을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사회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선거구를 대표하는 개별적 대표 들의 집합체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정주주가 특정이사를 지명하거나 선출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이사회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에 해당한다 사실상 모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지배주주가 존재 하는 경우 이러한 원칙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C. 이사회에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사회는 자신의 직접적 활동뿐만 아니라 주요 집행간부의 임명과 감시 및 경영일반에 대한 통제과정을 통해 기업의 도덕적 기준(ethical tome of a company)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확립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 일상적 영업활동과 장기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은 이사회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행동강령(company codes of conduct)을 만들어 조직 내에 전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전사적 행동강령(company-wide codes)은 다양한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및 주요 집행간부의 행동기준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최소한 윤리강령(ethical code)에서는 해당회사의 주식 거래를 포함한 사적이익(private interest) 추구의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윤리 강령은 법률준수의무 이상의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법률준수는 윤리강령과 무관하게 항상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9일 (월)	6월 10일 (화)	6월 11일 (수)	6월 12일 (목)
미	달	러	(USD)	1359.00	1358.90	1359.90	1368.80
일	본	엔	(JPY)	939.48	939.47	938.35	948.94
영	국	파운	(GBP)	1839.41	1841.51	1836.20	1856.85
캐	나	다	(CAD)	992.26	991.72	994.88	1001.61
홍	콩	달	(HKD)	173.19	173.16	173.28	174.40
중	국	원	(CNH)	189.25	188.84	189.18	190.62
유	로	화	(EUR)	1550.21	1552.07	1554.64	1575.08
호	주	달	(AUD)	883.08	885.32	887.33	890.47
싱	가	폴	(SGD)	1053.82	1056.61	1057.18	1066.00
말	레	이	(MYR)	321.47	321.21	321.07	323.02

기타소득 귀속 및 지급년월 관련

Q 다음이 아니고, 세무조사를 받아서, 과거년도에 대한 인정이자 기타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귀속년월은 2021년이고, 지급년월은 2024년 2월로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2024년 2월까지인지요? 2025년 2월까지인지요?
 소득변동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에 해야 하나요? 2025년 5월에 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에 의해 소득처분받은 경우 세무당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주며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
 하지 않습니다.
 처분받은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과다발행 건 후속조치에 대한 문의 건

Q 다음 상황일 때 당사가 취해야 하는 후속조치 및 가산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황>
 3월말 매입세금계산서 12,560,160 원을 발행받았어야 했으나, 25,120,320 원으로 발행 받음. 5
 월말 현재 오류를 인지하였음.
 당사는 월별조기환급신고(부가가치세)를 하는 업체로 3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4월 25일에 완료
 하였고 환급도 받았음.
 당사가 고려하고 있는 후속조치옵션은 아래와 같은데 가능한 후속조치 옵션이 있는지 조언 부
 탁드립니다.
 1. 3월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한다. ==> 수정 발행시 기 부가세신고를 수정해야 하는지? 1기 확
 정신고시 수정된 금액만큼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2. 5월 세금계산서 발행시 5월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5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A 오류로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수정발급하고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
 여야 합니다. 다만, 발급이후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된 경우는 증감사유가 발생된 날을 공급시기
 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전 신고분을 수정신고하지 않고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국내용역에 대한 해외업체 및 해외업체의 국내법인과 계약시 부가세처리여부

Q 국내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대해 해외업체와 그 해외업체의 국내법인에게 하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이지만 해외업체와 하도계약시에는 용역(물품)의 수입으로 보고 인보이스를 통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외업체의 국내법인의 경우 국내거주자인 법인과 직접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금지급을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국내법인에게 대금지급시에는 원화가 아닌 달러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공급받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인보이스 통한 대금지급을 하면 되며, 대금 지급시 어떤 통화로 지급할 것인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기계장치 수리에 따른 비용에 대한 자본적지출 가능여부

Q 기존에 20년정도 사용한 기계장치에 대해 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계장치 수리는

- 최초 성능이 100 이었으나 오랜 사용으로 인해 성능이 70으로 떨어져있으며 수리를 통해 100의 성능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작업

- 기계의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수리를 진행해 원활한 사용이 되도록 하는 작업
상기 2가지의 형태가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

해당 수리를 통해 기계장치의 사용가능기한은 현재의 상태일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수리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법인세법상 자본적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하는데, 자산이 원래 성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도 자산의 원래성능회복을 위한 수선비라면 수익적지출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손세액공제요건 및 적용절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공급받는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이나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인해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적용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5②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①에 의한 대손금 인정사유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상법 제122조·제147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보험료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2년 또는 1년 등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행위에 따른 채권이라도 민법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어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음법상 어음의 소멸시효규정은 상법 규정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어음법상 소멸시효규정은 어음 자체에 대한 시효규정으로 본래의 매출채권에 대한 시효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조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의 적용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수표법 제51조는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민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 적용하는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을 두고 있어 이 규정은 상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불능 채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서 파산이 선고되어 회수하지 못하게 된 채권 및 채무자 재산이 국가 등에게 강제 집행 처분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7)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수표 및 어음

어음·수표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도발생일이란 어음의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어음의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그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제시기간경과 후에 제시한 때에는 은행이 그 지급을 거절하므로, 어음의 제시기간경과 후에 부

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제시기간을 넘겨서 제시된 어음에 대하여는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어음발행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권은 존속하므로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8) 그 외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사유

이밖에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2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받거나 대손처리 요구받은 채권,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중소기업청장 등이 인정한 것 등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절차 및 대손사실입증 서류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 채권배분계산명세서·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 등(파산·강제집행시), 가정법원 판결문(사망·실종선고시), 회사정리계획인가안(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시), 부도어음이나 수표사본(부도어음·수표시) 등이 있다.

◆ 대손사실 입증서류 ◆

유형별	첨부서류
파 산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획서
강제집행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획서
사망·실종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획서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화의인가안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어음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원본)
상법상의 소멸시효 및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	매출(입)세금계산서, 기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대금 청구내역 등)
기 타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의 회수불능 입증서류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15		25	
반도체	20		3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화

표창기업에 대한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분야	인센티브
세무·회계	① 5종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공제 사전심사, 법인세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관련 Fast track, 가업승계 컨설팅) ② 주기적 지정감사 유예 심사시 가점 부여 ③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상장·공시	④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⑤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⑥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
홍보·투자	⑦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⑧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주요 세액공제·감면 요약

구분	내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경우 해당 사업소득세를 5-3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최소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사업소득세 50-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접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또는 증가한 고용인원을 3년간 유지하는 경우에 증가 1인당 일정액(850만~1,550만원)을 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23.6.30 당시 고용하던 비정규직을 '24.12.31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통합투자 세액공제	부동산임대업 및 금융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구입 또는 투자하였을 경우 10-25%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분리과세 가능한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 세액공제 안 받은 저축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저축

- 부득이한 사유 의료 목적, 천재지변 등으로 적립금 인출 시 분리과세
- 1,500만 원 이하 금융회사가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 종결(연금수급자가 종합과세 요청 가능)
- 1,500만 원 초과 해당 연금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16.5% 단일세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동기부여(Motivation)의 중요성 5가지

1. 목표 설정과 방향 유지에 도움이 된다

동기부여는 자신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지속적인 학습 습관을 만든다

동기가 있는 사람은 반복적인 학습과 실천에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꾸준함은 결국 실력을 만들고, 자기계발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3.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단기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성장'입니다. 동기부여는 조급함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추구하게 합니다.

4. 업무 몰입도와 시너지를 만든다

자기계발은 업무성과와도 연결됩니다. 동기 있는 사람은 업무 중에도 관련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고, 실무에 적용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5.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높인다

어떤 과제를 해결한 뒤의 성취감은 다음 시도를 위한 자산이 됩니다. 이는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지고, 더 어려운 도전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기부여는 자기계발의 '점화 장치'이자 '연료'입니다. 작게라도 자신만의 동기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복숭아 삶아서 냉동상태로 수입하면
수입부가세 과세물품임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3969, 2024.11.21

질 의

-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한 복숭아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수입 미가공식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법규법인-838, 2024.11.21

질 의

- 2016 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

금불산입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2024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정으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이하 "채무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2016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해당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아연괴를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제조한 주물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부가-423, 2024.06.25

질 의

- 아연괴를 매입해 주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대상인 스크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아연괴를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제조한 주물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아

연과 및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 "A법인")이 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게임 출시 후에 A법인에게 지급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게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내국법인이 A법인에게 게임 개발 중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이하 "MG")가 해당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국조-12, 2024.09.30

■ 질 의

- 국내법인인 게임 퍼블리셔(게임배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게임 개발사에게 게임 출시 전에 지급하는 "Minimum Guarantee"의 소득 구분

■ 회 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이들의 사용을 허용하는 실시권 계약

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 "A법인")이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에 포함되거나 개발된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창작물 등)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에 대한 사용, 복사, 판매, 배포, 수정, 마케팅 등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취소·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게임 출시 후에 A법인에게 지급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게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내국법인이 A법인에게 게임 개발 중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이하 "MG")가 해당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올해 대상자 2051명

국세청이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순차적으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발송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돕고 있으며,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해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가 게시돼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관세청, '철강 수출기업 송통 톤다'... 30일부터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

관세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오늘(30일)부터 HS 코드 7304~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류 제품에 대해 수출신고 전에 선적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날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하고, 기존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철강제 관류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선상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에 선박에 적재해야 하는 규정을 일부 품목에 한해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미국이 지난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 철강기업들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고시 개정에 따라 HS 제72류 일반 철강류에 이어, 제 7304~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류 제품도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수출 신고 정정이나 서류 검토로 인한 선적 지연을 피하고, 적재 작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제 관류는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크고, 선박 내 적재 순서에 따라 작업 전반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소한 지연도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연쇄적 물류 지연을 방지하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민간 앱서 조회부터 환급신청까지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8일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 과납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6월 30일까지

- 국세청, 2025. 6.5

① 신고개요

- '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 신고 대상자는 '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입니다.

② 신고안내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과 책자를 6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③ 납세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 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하였습니다.
-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작성요령/사례

| 주요 실수 사례 Top 7 |

[공통사항]

- ① 중소기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
- ② 주식보유비율 계산 발행주식총수 - 자기주식
발행주식총수 (자기주식 포함)
- ③ 신고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지배주주만 신고(친족주주 무신고)
- ④ 세후영업이익 변동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무신고

[일감몰아주기]

- 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증여의제이익) 차감 거래비율
- ⑥ 주식보유비율 계산
(과세요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포함

[일감떼어주기]

- ⑦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 시 신고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음을 이유로 무신고



4 신고내용 확인

-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25.6.30.)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됩니다.
-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납세자들에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증여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 ① 개시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times 12] \times 3$$
- ② 정산사업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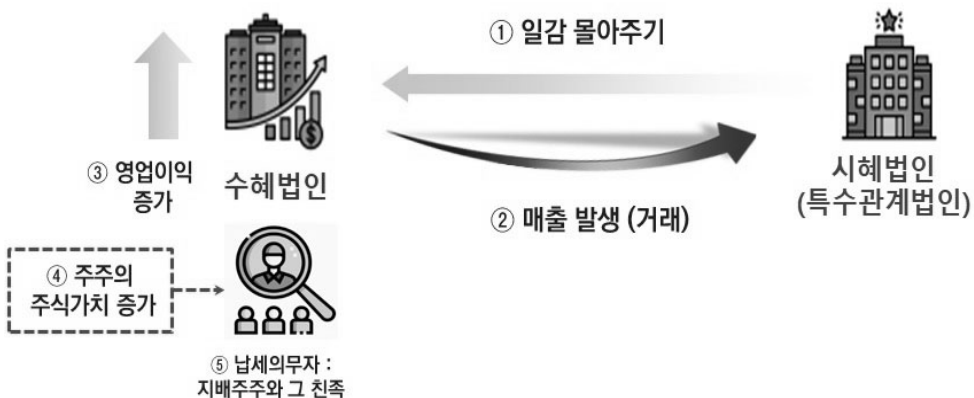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및 납부(환급)

□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참고 2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차감한 비율

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23.2.28.개정)

4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증령”이라 함) §34의3⑧)

$$\text{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5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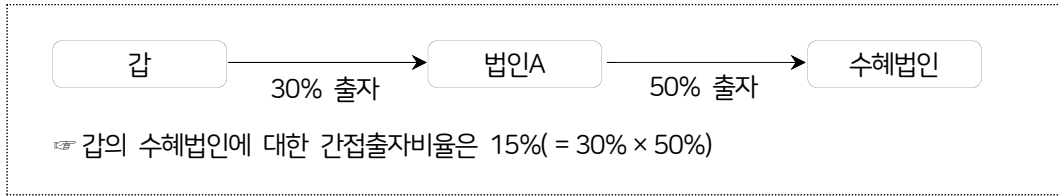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⑧)

| 과세제외매출액 |

-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②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③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⑦ 프로스포츠클럽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

6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7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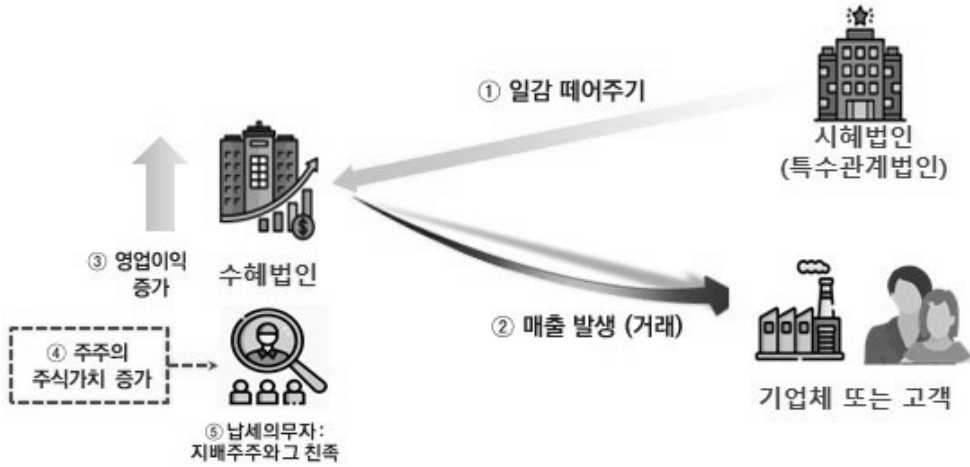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 ① 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④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참고 3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1 어떤 경우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2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든 것은 무엇인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19.12.27.)

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4 출자지분을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5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

① 개시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times 12] \times 3$$

② 정산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6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23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2년부터 '24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해설

- 국세청, 2025. 6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이익의 계산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1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 세후영업이익 = (가 - 나) × 다

- 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 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다. 과세매출비율

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 ㉠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입니다(상증령 §34의3⑫1).

◆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① ± ②)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 ② 영업손익과 관련된 아래 세무조정사항
- ㉓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
 - ㉔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㉕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㉖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무조정사항
 - ㉗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 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 관련 세무조정사항
 - ㉙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주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을 말하므로, 세무조정 전 영업손익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서 첨부서류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는 영업손익과 관련된 7개 세무조정사항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사항 예시

- ① 매출 누락액
- ② 계정과목 분류 오류 :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를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가액
- ③ 가공계상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
- ④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손금 중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경비 손금부인액

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세무조정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① × ②)

- ①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
- ②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②의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다. 과세매출비율(상증령 § 34의3⑩3)

$$\text{과세매출비율} = 1 - \left(\frac{\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매출액 포함)}}{\text{수혜법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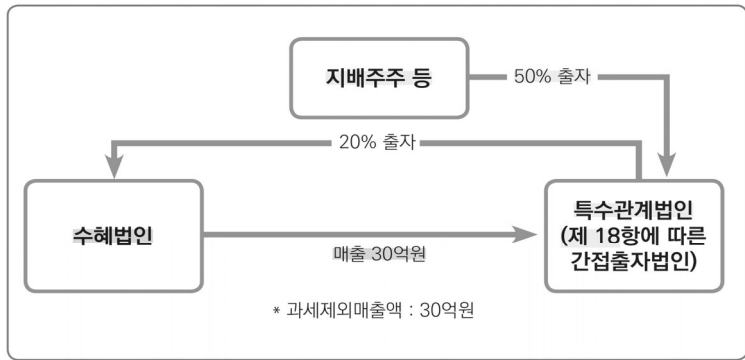
2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과세매출비율을 산정할 때, 앞에서 설명한 "과세제외매출액" 8개 유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상증령 §34의3⑭).
-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8개유형)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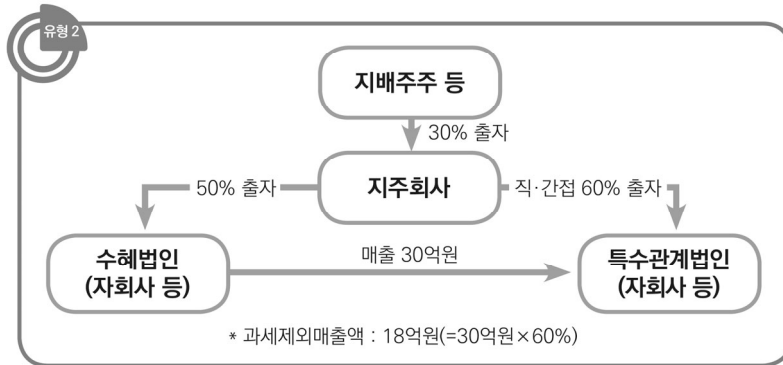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⑫)

1.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상증령 제34조의3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하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라 함)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 ①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상증령 §34의3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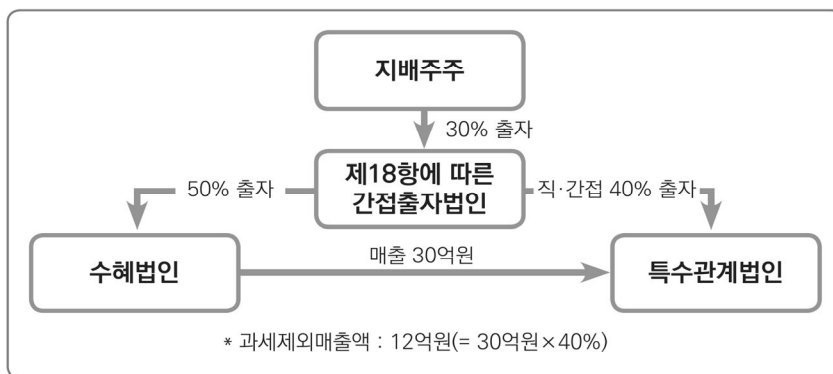
-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④2).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④3)



- ④ 상증령 제34조의3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④4, 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주회사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동조 제14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1.4.)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적용범위 (상증령 §34의3⑭)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과세매출비용 산정시 적용)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82, 2014.04.02.)

- 과세요건 판단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left[\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right]$$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left[\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right]$$

-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과세매출비용

$$\left[\frac{\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times 100 \right]$$

3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 중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비율"이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거래비율(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거래비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거래비율(40%)의 1/2을 초과하는 비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말합니다.(상증법 §45의3①).

-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증자인 각 주주별로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상증령 §34의3⑭).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과세요건 판단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만 반영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p>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p> $\left[\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 \times 100 \right] - 5\%$
<p>② 수혜법인이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p> $\left[\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 \times 100 \right] - 50 \cdot 20\%$

4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직접 + 간접)	일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주식보유비율 - 0 %	주식보유비율 - 10 %	주식보유비율 - 5 %

◎ 중소·중견 기업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세후영업이익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곱하는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은 각 주주별로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중소 10%, 중견 5%)을 차감한 비율을 말합니다.

※ 일반기업은 주식보유비율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후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 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빼야합니다(상증령 §34의3③).

<p>◆ 한계보유비율 차감 순서(상증령 §34의3③)[중소·중견기업만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차감 -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보유비율이 낮은 것에서부터 차감 - 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0.1%)미만인 경우의 간접출자관계는 제외되므로 한계보유비율 차감대상이 아님
--

**◆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비교****● 지배주주 판정시 (상증령 §34의3②)**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접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상증령 §34의3⑧)

-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①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② 지배주주 등과 ①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③ ① 및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5**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증여의제이익 계산**

- 각 수증자별로 계산(법인유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달라짐)

-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주식보유비율 - 10%]

-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 2이상인 경우는 각각 계산)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함
- 배당받은 소득에 대한 일정금액 공제

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상증령 §34의3⑩, 2023.2.28.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으로 합니다.

$$\text{배당 소득} \times \frac{\text{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상증령§34조의3⑬에 따라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유동화전문화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3①)**

-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용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배당 소득} \times \frac{\text{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left[\text{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left(\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times \text{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right) \right]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나.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이익을 준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상증령 §34의3⑯).

다.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지배주주 1명이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각각 계산합니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라.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상증법 §47②)

-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개별 건별로 과세되므로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47①).

마. 요약

수혜법인		과세 요건	요건 충족	증여의제이익 계산
중소기업	주식보유비율	> 10%	→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50%		
중견기업	주식보유비율	> 10%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40%		
일반기업 (공시대상기업 집단포함)	주식보유비율	> 3%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30%		

* 요건판단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8개)}}$$

* 증여의제이익계산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4개)}}{\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4개)}}$$

일감때어주기 증여의제 계산

1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증여의제이익은 (1)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간 부문별 영업이익을 추정하여 계산하되 (2) 3년 후 실제손익으로 정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추가납부 및 환급)합니다. 즉, 사업기회를 최초로 제공받은 사업연도에 3년분을 일시에 신고·납부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면, 실제로 발생한 부문별 영업이익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증여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이 당초 증여세 납부당시 계산했던 증여의제이익보다 작은

경우에는 납부했던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3년간 증여의제이익

○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1)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

수혜법인의 이익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 34의4 ③). 한편, 이러한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 방법은 다음(3)의 정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수혜법인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대해 아래항목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에서 편의상 "세무조정후 영업이익"이라 한다.)

-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또한, 수혜법인의 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전체 세무조정후 영업이익을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부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 ②)

① 수혜법인의 전체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②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 ÷ 전체 매출액

(2)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계산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은 다음 '가'의 세액에 '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 나.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해당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합니다.(상증법 §45의4⑤)

$$\text{배당 소득} \times \frac{\text{상증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나. 정산 증여의제이익

(1) 정산사업연도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규정에서 "정산사업연도" 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규정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 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당초 실제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증여 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당초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45의4③)

○ 정산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상증법 § 45의4④)

(2) 배당소득 공제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상증령 34조의4 ⑥)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정산증여의제이익) ÷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시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나. 정산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 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 금융감독원, 2025. 5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점검사항

- (리더십 책임) 품질 지향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법인의 정책과 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 실태 점검
- (윤리적 요구사항) 감사업무 수행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체계 점검
- (업무의 수용과 유지) 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단계에서 위험평가의 적절성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의 수행여부 점검
- (인적자원) 과도한 업무수입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감사 보수 상승에 상응한 적정 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실태 점검
- (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심리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통제절차와 운영실태 및 감사조서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
- (모니터링)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운영, 감사업무수행 관련 모니터링(사후심리)의 적정성 점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미흡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

구됩니다.

<연도별 품질관리 감리 평균 지적 건수>

연도	'20 (9개 회계법인)	'21 (13개 회계법인)	'22 (17개 회계법인)	'23 (14개 회계법인)	'24 (14개 회계법인)
평균 지적 건수	12.6건	14.4건	10.5건	9.1건	8.7건

올해는 삼성·안진 등 2개의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리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을 평가·선택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내용은 (별첨) 「2024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I 품질관리 감리 개요

1 품질관리 감리의 정의 등

- (정의 및 목적) 품질관리 감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서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차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명 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을 권고하거나(심사), 회계처리 위반이 중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하는(감리) 것임
 - 심사·감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업무인 반면,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와 관련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의 전반에 대하여 그 구축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업무임



- (등록요건 감리와 차이) 등록요건 감리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외부감사규정」 [별표1])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점검하는 업무로서
 - 감사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준」의 구성요소별로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품질관리 감리와 차이가 있음
- (품질관리시스템의 6대 요소) 감사인은 품질관리제도를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6가지 구성요소 별로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여 운영하여야 함(‘붙임1’ 참고)
 - ①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 ②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 ③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맡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 ④ 인적자원 -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 ⑤ 업무의 수행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 ⑥ 모니터링 - 상기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2 품질관리 감리 대상선정 및 감리 수행방법

- (대상 선정)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감리 대상을 선정하며,
 - 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비중, 감사인 지정군*별 감리주기, 직전 감리 후 경과기간,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공동감리 요청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감사인 감리 대상을 선정
 -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 가능한 회계법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등록 공인회계사 수, 손해배상능력, 품질관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가 ~ 라군’으로 분류(‘붙임2’ 참고)
- (감리 수행방법) 감사인의 본점(주사무소)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되, 필요시 경영진 및 관련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도 실시

3 품질관리 감리결과 처리절차 및 공개범위

- (처리절차)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감사인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 개선권고사항이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

- (공개범위) 개선권고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경영상 비밀’, ‘경미한 개선권고*’ 등은 비공개
 - *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여부는 위반행위의 반복여부, 표본검사(Sampling test) 결과 위반정도(건수, 비율 등), 개선여부 및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II 2024년 품질관리 감리 실시내용

1 감리대상 회계법인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4년 14개 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였음
<2024년 품질관리 감리 대상 회계법인 현황>

(단위 : 사, 명, 억원)

분류	회계법인	일반현황*			재무현황*			
		등록 회계사수	외부감사 회사수	주권 상장	총자산	자기 자본	매출액	외부 감사
4대 법인 (2개사)	삼정	2,196	1,221	296	2,647	1,068	8,525	2,636
	안진	1,196	728	122	2,370	304	5,150	1,362
기타 법인 (12개사)	성현	186	409	57	297	111	580	234
	이촌	237	465	79	337	178	768	190
	한울	308	878	129	589	188	1,033	369
	삼화	149	520	47	261	145	465	157
	대현	88	315	22	163	87	369	104

광고	54	351	22	110	69	192	96
정인	49	98	17	70	33	159	45
선진	60	263	18	85	30	200	67
정진 세림	84	307	41	118	48	220	111
인덕	126	474	31	159	59	357	133
한미	93	267	45	163	85	330	102
삼도	187	342	42	249	99	551	147

* 회계법인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2 회계법인별 감리실시 현황

-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항 외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중 일부를 선정하여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

분류	4대법인	기타 등록법인
평균 감리일수	46일	24.7일
평균 투입연인원*	271명	72명

* 연인원 : 감리일수 × 투입인원

III 2024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1 감리결과 개요

- 품질관리 감리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건수는 평균 8.7건이며,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6.0건으로 기타 등록법인의 지적건수 평균 9.2건을 하회
-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2.2건), 리더십책임(1.9건), 윤리적 요구사항·인적자원(1.5건)순으로 많으며, 모니터링의 경우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1.5건으로 기타 등록법인 평균(0.6건)을 상회

2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지적사항

- (리더십 책임) 품질 지향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법인의 정책과 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 실태 점검
 - 품질관리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인사·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미흡(11건)
 -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자금관리가 미흡하거나, 특수관계자인 일반직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등 통합관리 미흡
 -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의 연계성이 미흡하거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않은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품질우선의 보상체계 운영이 미흡(13건)
 - 품질관리의 권한 및 책임 관련 체계의 운영이 미흡(1건)하거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이사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의 운영이 미흡(2건)

- (윤리적 요구사항) 감사업무 수행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체계 점검
 - 독립성 준수 의무자가 독립성 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하는 등 독립성 정보의 수집·관리가 미흡(12건)
 - 감사업무 등 수입시 독립성 점검절차 운영 등이 미흡(9건)

- (업무의 수용과 유지) 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단계에서 위험평가의 적절성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의 수행여부 점검
 - 계약 전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험평가과정에서 파악된 위험 등을 감사절차에 반영하는 절차 운영 등이 미흡(12건)

- (인적자원) 과도한 업무수입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감사 보수 상승에 상응한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실태 점검
 - 감사투입시간을 지연입력 및 지연승인(11건)
 - 감사대상기업의 특성, 감사참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배정하는 등 업무배정의 절차 운영이 미흡(5건)
 - 신규 공인회계사 채용 시 적격성 여부 확인 및 승인 절차 운영이 미흡(5건)

- (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심리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통제절차와 운영실태 및 감사조서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
 - 사전심리 관련 통제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21건)하거나, 감사조서 취합 및 관련 내부통제절차 운영 등이 미흡(10건)



- (모니터링)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운영, 감사업무수행 관련 모니터링(사후심리)의 적정성 점검
 - 감사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 보안통제가 미흡(2건)하거나, 사후심리 절차 운영 또는 사후심리 결과 파악된 미비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미흡(8건)
 - ※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후, 「업무자료 - 회계 -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 회계법인 제재정보 등 - 감사인감리 개선권고사항」 메뉴 참조

(붙임1)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별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여야 함
-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로부터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책임을 부여 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맡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능력, 그리고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등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함
 - 독립성 요구사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회계법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

- 사는 의뢰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함
-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다음 사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위험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이 요구되는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최소한 연1회 독립성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받아야 함
- 또한, 회계법인은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동일한 상위직 구성원을 장기간 인증업무에 참여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착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함
 -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업무수행이사과 업무품질관리검토에 책임을 지는 개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기타 교체대상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함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회계법인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을 가지고 있음
 -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은 의뢰인의 성실성을 고려하였으며,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할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함
- 새로운 의뢰인과 업무를 수용하기 전, 기존의 업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때, 그리고 기존 의뢰인과의 새로운 업무를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입수함
 -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함

-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나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함

4. 인적 자원

- 회계법인은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각각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업무수행이사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업무수행이사의 성명과 역할을 의뢰인의 경영진의 핵심구성원과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함
 - 업무수행이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 역량 및 권한을 가짐
 -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은 명확히 정의되고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이사에게 커뮤니케이션됨
- 회계법인은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5. 업무의 수행

-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며,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짐
 -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이용 가능함
 - 이러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해당 자문에 따른 결론이 문서화되며, 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람과 자문을 제공한 사람이 모두 동의함
 - 자문에 따른 결론이 실행됨
- 회계법인은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 모든 상장기업 재무제표감사에 대해서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 상장기업 재무제표 감사 외의 모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와 검토, 기타 인증 업무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
 - 상기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보고서일자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전의 일자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유의적 사항을 업무수행이사와 토의
 - 재무제표 또는 기타 인증대상정보 그리고 보고서 초안을 검토
 -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도달된 결론과 관련된 일부 업무문서를 선정하여 검토
 -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달된 결론을 평가하고 보고서 초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
- 회계법인은 다음에 관한 문서화를 요구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문서화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 업무품질관리검토는 보고서일 이전에 완료되었음
 -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
-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의 보고서가 확정된 후 업무팀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필요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문서를 보존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6. 모니터링

-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 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평가를 포함함(주기적으로 각 업무수행이사마다 최소한 1개의 완료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포함)
 - 회계법인에서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을 가진 파트너(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책임이 배정되도록 요구함
 - 업무수행자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업무 검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과 적합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관련 업무수행이사와 적절한 타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 권고사항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개별 업무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를 취함
 - 발견사항을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개발 업무 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함
 -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변경함
 -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특히 반복적 미준수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림
-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절히 다루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과 진정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주장